

보도

2025.2.17.(월) 조간

배포

2025.2.14.(금)

올해부터 **분기배당도**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.

- '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'
[23.1.31. 금융위, 법무부 공동 발표] 후속조치 -

< 주요 내용 >

- '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·6월·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**분기배당도** '배당액 확정'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'배당기준일'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 -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
 - 배당 관련 투자 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·한국상장사협의회·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, 상장사협의회, 코스닥협회는 정관개정 등 배당절차 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 배포, 설명회 개최 등 교육·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.

1. 배당절차 개선 경과

□ **(개요)** '23.1.31. 금융위·법무부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배당절차 개선방안*을 마련·발표하였습니다.

* 금융위·법무부 등 '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

-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,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토록 하여
- 투자자들이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□ **(결산배당 이행)**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'24.12월말 기준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 상장사의 43.2%(1,008개사)가 정관을 개정하였고,

- 그 중 109개의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.

□ **(분기배당)** '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·6월·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*됨에 따라

* 법령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('24.12.27.) 시행('25.1.21.) / 표준정관 개정상징협 1.24, 코스닥협 1.23)

- '25년부터 분기배당의 경우에도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확정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< 분기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>



2.

상장회사 조치 필요사항

- **(정관개정)** 상장회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야 합니다.
 - '24년에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회사도 '25년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'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.
- ※ <결산배당>의 경우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, 그 사실을 기준일 2주전에 공고하게 하거나,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여야 함

<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 >

	개정 전	개정 후
분기 배당	<p>제45조의2(분기배당) ①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,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</p>	<p>제45조의2(분기배당) ①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,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<u>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</u>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이 회사는 <u>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※ 회사는 분기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분기배당 기준일을 정하거나, 정관에서 특정일을 분기배당 기준일로 규정할 수 있음(예컨대, '이 회사는 4월 ○일, 7월 ○일 및 10월 ○일 현재의 주주에게 제1항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').</p>
결산 배당	<p>제45조(이익배당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p>	<p>제45조(이익배당) ① (좌동)</p> <p>② 이 회사는 <u>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※ 회사는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 시마다 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(예컨대, '이 회사는 ○월 ○일 24시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제1항의 배당을 한다.').</p>

□ **(정기보고서 기재)**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**배당정책**을 구체화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.

- ① **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,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여부 및 향후 계획** 등에 관한 사항과,
- ② **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,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,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**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< 정기보고서 서식 개정내용 >

개정 전	개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5-6-1조(배당) ①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,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다.</p>	<p>제5-6-1조(배당) ① 회사의 배당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</p> <p>1.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</p> <p>2.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7fa;">구분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7fa;">현황 및 계획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나.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7fa;">구분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7fa;">결산월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7fa;">배당여부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7fa;">배당액 확정일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7fa;">배당 기준일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7fa;">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7fa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align="center">O/X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align="center">O/X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align="center">O/X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align="center">O/X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align="center">O/X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align="center">O/X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. 기타 참고사항(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)</p>	구분	현황 및 계획	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		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		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		구분	결산월	배당여부	배당액 확정일	배당 기준일	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	비고			O/X			O/X				O/X			O/X				O/X			O/X	
구분	현황 및 계획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결산월	배당여부	배당액 확정일	배당 기준일	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O/X			O/X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O/X			O/X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O/X			O/X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4

당부사항 및 향후계획

- **(당부사항)**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회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 -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금번 정기주주 총회에 분기 배당에 대한 정관개정도 이행해주시기 바라며,
 - 정관개정에 그치지 않고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액을 확정 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- **(향후계획)**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, 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는 함께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
 - 안내자료, 설명회 등을 통해 정관개정 및 배당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·홍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.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	책임자	국 장	조치형	(02-3145-8100)
		담당자	팀 장	이윤길	(02-3145-8475)
	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	책임자	부 장	이연숙	(02-3774-8730)
		담당자	팀 장	김재홍	(02-3774-8740)
	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	책임자	부 장	이방순	(02-3774-9800)
		담당자	팀 장	허 승	(02-3774-9090)
	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1본부 기업법제팀	책임자	본부장	김 춘	(02-2087-7008)
		담당자	팀 장	강택신	(02-2087-7150)
	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 법제팀	책임자	그룹장	진성훈	(02-368-4553)
		담당자	팀 장	김 구	(02-368-4570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